

즐거운 배움 더불어 사람으로 꿈을 키워가는

연성교육통신

<http://yeonseong.es.kr>

☎ 교무실

(070)-7014-8703

◆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◆

- 집중신청기간 : 3. 4.(월)~3. 22.(금),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-

□ 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.

<2024학년도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항목>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	461,000원(연 1회)	654,000원(연 1회)	727,000원(연 1회)
교육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급 방법: 신청인 명의의 카드(신용·체크카드)에 포인트 충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별도 전용카드(선불카드) 제공 (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·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을 통한 바우처 지원) ☎ 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 		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 등 		

※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, 교육비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☎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

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분	내 용	
기간	2024. 3. 4.~3. 22. 신청(집중신청기간 운영)	
	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	
지원 대상	교육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"소득인정액"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'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86만원)
	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초생활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"소득인정액"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학생 ('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43만원)
신청 방법 (택1)	① 방문신청	② 온라인 신청(공동인증서 필요)
	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복지포(http://www.bokjiro.go.kr) ■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onedick.neis.go.kr)
제출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분증,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 등 (신청,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) ※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,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,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 	

☎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·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,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

☎ 문의 :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, 경기도교육청콜센터(031-1396),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

2024. 3. 6.

연성초등학교장

[붙임1]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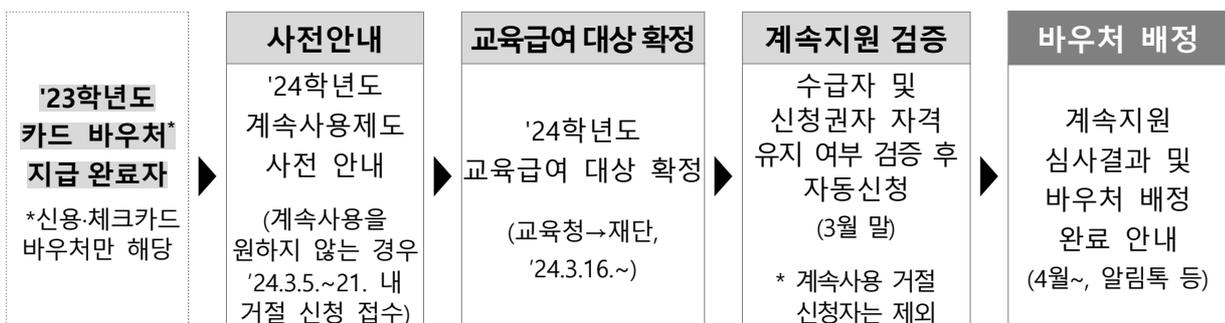
□ '24년 4월 1일부터 '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
지원내용	교육급여 수급권자(학생)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- 초등학생(연 46.1만 원), 중학생(연 65.4만 원), 고등학생(연 72.7만 원)
신청권자	1) ①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2) ② 보호자(교육급여 신청인,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)
지원수단	3)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(신용·체크카드)에 포인트 충전 4) ② 간편결제 수단 5) ③ 전용카드('24년 5월 개시 예정) ※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·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(간편결제, 전용카드)을 통한 바우처 지원
신청기간	2024. 4. 1.(월) ~ 2025. 6. 30.(월) (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)
사용기간	바우처 배정일 ~ 2025. 8. 31.(일)
신청방법	온라인 신청(간편인증, 공동·금융인증서,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)
	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(홈페이지) 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)  <신청 QR 코드>
신청문의	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 ※ 통화 연결 후, ① 2번(음성 ARS)→② 본인확인→③ 8번(교육급여 바우처)으로 연결

□ '23학년도 신용·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'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,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.

※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, 취소기간('24. 3. 5.(화) ~ 3. 21.(목)) 내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

6) 계속사용자(신용·체크카드) 자동신청 지원 절차('24. 3월)



□ '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,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교육급여)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

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

교육급여

교육비 지원

근거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(교육급여)

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
신청

신청기간 연중 상시, 학기초(3월)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
(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)

신청방법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② 온라인 '복지로'

선정기준

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
※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식이 상이하여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음(상세 사항은 지침 참고)

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
그 외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(범위, 기준 상이)
※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식이 상이하여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음(상세 사항은 지침 참고)

신청기간 및 방법

상시
학교에서 보장결정정보 결정 및 통지
※ 지자체에서 중위소득을 통해 적합여부 확인 가능

심사기간 : 매년 5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
학교에서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여부 결정 및 통지
※ 교육정보화 지원은 교육청에서 심사

지원규모

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모로 지원

시도교육청 기준, 예산에 따라 상이

지원 내용 및 방식

교육활동지원비 : 바우처 지급(한국장학재단)
※ 온라인 신청 필수
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 : 학교에 실비 지급

학교에 실비 지급 : 고교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,
급식비(평일 중식비)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
교육정보화지원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(통신사에 지급),
※ PC지원여부, 항목별 지원금액은 교육청별 상이

지원기간

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(자격 취득 후 중지사유 발생 시까지)
※ 중지사유 : 학업중단, 사망판소, 수급거부, 고3졸업, 소득초과 등
※ 소득재선결과 등에 따라 상시 자격 변동발생
※ 학년도 중간에 소득 변동 등으로 탈락될 수 있음

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(학년도 동안 탈락 없이 지원)
※ 교육비 추혜지원 경우 다음 학년도에 별도 신청 없이 소득·자격조사(학인조사)를
진행하여 갱신되나, 매년 신청이 원칙
※ 단,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이며, 교육청의 예산
범위 내 지원
※ 학년도 단위로 신청·심사하여 자격이 갱신됨



초·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FAQ



교육급여

Q 교육급여 신청 및 수급자 선정 조건은 무엇인가요?

»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 사이트에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Q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?

»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학용품비 항목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Q 교육급여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

» 교육급여 신청 내용 취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를 작성·제출하시면 됩니다.

Q 수급자로 통보받은 경우, 바우처는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?

» 학교에서 교육급여 보장 결정통지를 받았다면, 반드시 온라인(e-voucher.kosaf.go.kr)으로 바우처(교육활동지원비)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바우처는 만14세 이상의 수급자(학생) 본인 또는 보호자(교육급여 신청인, 수급자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)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
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 및 사용해야 하나요?

»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.4.1.~2025.6.30.까지 온라인(PC, 모바일)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,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.8.31.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참고

Q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?

» 2023학년도에 신용·체크카드로 바우처를 지원받았다면, 2024학년도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과 동일한 카드로 바우처가 자동신청될 예정입니다.



교육비 지원

Q 교육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, 현재의 법적 자격과 상이합니다.

» 교육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, 법적 자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. 자격을 변동하고 싶은 경우,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Q 첫째가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, 둘째/셋째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
» 기존에 가구원 중에 교육비지원을 받는 형제가 있더라도 둘째, 셋째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지원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신청 시 기존 학생이 소득, 법적자격 조사를 통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 자퇴/퇴학 후 재입학을 하였는데,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?

» 자퇴/퇴학을 한 경우, 교육비 지원 보장중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, 재입학 후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.

Q PC,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첫째, 둘째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?

» 교육정보화 지원(PC, 인터넷 통신비)의 경우 가구 당 1명에게 지원합니다. 대체로 최소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나, 교육청 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두 학생 모두 신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. 다만, 교육청별 PC지원여부,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PC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Q 23학년도에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았습디다. 24학년도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할까요?

»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립니다.
(1) 2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·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, "확인조사 대상자"로 다음 학년도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소득·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
(2) 23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, 해당 학년도에 한 해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2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함